

제2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의 회 사 무 국
위 원 회 제 안

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6. 9. 2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6. 9. 2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7. 13.字 구미시의회 하반기 정기인사 시 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, 관련 규정의 팀장 명칭을 ‘의정팀장’에서 ‘총무팀장’으로 현행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12조(간사) 중 “의정팀장”을 “총무팀장”으로 변경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
나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다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구미시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의정팀장”을 “총무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간사) 심의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의회사무국 <u>의정팀장</u> 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.	제12조(간사) ----- ----- ----- <u>총무팀장</u> ----- -----.